

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6. 5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6. 5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6. 15

(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총무과장 정석한)

가. 제안사유

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 및 「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사하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함(안 제2조)
- 보조사업의 제한 사유를 정함(안 제3조)
- 보조기준액을 정함(안 제4조)
- 보조금의 신청, 교부결정,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 내지 제11조)
-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,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2조 내지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
「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
- 입법예고 : 2006. 5. 10 ~ 5. 30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 및 「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을 근거로, 구비를 재원으로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
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,
- 안 제3조(보조사업의 제한) 및 제4조(보조기준액)의 규정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% 범위 안으로 하여 상한선을 두었으며
- 안 제5조(보조금의 신청), 제6조(보조금의 교부결정)는 보조금 신청서의 제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며
- 안 제7조(심의위원회 설치), 제8조(기능), 제9조(위원회의 구성)는 보조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사하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, 그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
- 안 제12조(목적외 사용의 금지)는 보조금을 사전 승인없이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고

- 안 제13조(보고 및 검사)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며
- 특히, 안 제4조(보조기준액)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%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,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에 대한 관련 법규의 규정은 없으나 부산시의 경우 기 제정한 모든 구가 구세의 3%(연제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의 3% 이내) 범위로 정한 것에 기준을 둔 것으로 보아지며
- 우리구의 연간 보조기준액(3% 적용시)은, 2006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구세 176억 × 0.03 = 5.28억원 정도로 예상됨
-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,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서, 열악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
-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